

중국의 약물자원 및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동향 분석 - 「나고야의정서」 채택과 관련하여 -

이민호*

한국한의학연구원

Analysis of China's Efforts to Protect Medicinal Resource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in light of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

Min-Ho Le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full support aimed at promoting the excellence of Chinese culture, includ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to the world after recognizing Chinese culture and medicine as elements that can generate national wealth.

Methods : In investigating China's awareness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CM, as well as it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measures, this study analyzed the law and platform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the designation status of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the recent research trend in the TCM field.

Results : First, China is taking various protective measures based on laws and institutional devices, including the Patent Act. Second, China is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by registering them as Chi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r UNESCO world heritages. Third, China is seeking to promote TCM throughout the wider world through various research and academic conferences, and by strengthening ties between nations.

Conclusions : With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s of the WIPO and CBD, and particularly the Nagoya Protocol in 2010, China is seeking to implement measures aimed at maximizing the national interest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CM. China began to implement a system of protection of medicinal resources and the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fter recognizing the potential crisis that could occur if Chinese medicine-related patents were taken over by foreign countries. As such, the system now takes various forms.

Key words : Medicinal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the Nagoya Protoco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서론

근대 이후 서구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역사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받던 중국의 전통의약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의 모토였던 현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

문화의 일부로서 다시금 조명받기 시작했다. 즉 중국의 전통 과학 중에서 중의학만이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한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¹⁾. 또 중의학은 전통문화의 한 떨기 꽃처럼 현대 서양의학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문화의 보물-중의학”이라 하였다²⁾.

*교신저자 : 이민호, 대전시 유성구 유서대호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 Tel : 042-868-9571, · E-mail : mhlee9799@kiom.re.kr

· 접수 : 2012년 08월 01일 · 수정 : 2012년 09월 10일 · 채택 : 2012년 09월 10일

중국의 전통의약은 크게 중의약과 소수민족의약, 민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³⁾. 중의약은 漢文化를 배경으로 한 중국 고대의학의 주류의학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학술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전통의약을 대표한다. 소수민족 전통의약에는 藏·蒙·維吾爾·傣·壯·苗·瑤·彝·侗·土家·回·朝鮮族醫藥 등이 포함된다. 민간약에는 민간의 양생습속, 단방경험, 草醫草藥과 의료방면의 특별한 기술 등이 포함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의약을 포함하는 전통의약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WIPO나 CBD와 같은 국제 레짐, 특히 2010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라 종래 전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인식되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이제 그에 대해 주권을 인정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기술 강국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유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자원의 상품화, 생물자원제공국과 기술보유국간의 대립구도 발생 등 생물자원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의 방대한 약물자원과 전통의약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은 자신들이 동아시아 전통의약의 중추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지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이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대응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의 약물자원 및 관련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들의 보호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한·중 FTA를 비롯하여 「나고야의정서」와 같은 국제 레짐 발효 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 등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찰 및 결과

1. 중국의 위기의식과 대응

중국에서 전통의약의 지위는 ‘中西醫并重’의 방침에 의거 의료위생체계에서 현대 서양의학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⁴⁾. 특히 2003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조례』의 제정은 중의약 발전에 상응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달리 대외적으로는 그들의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더욱이 중국은 해외 선진국들이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 특허를 대량으로 출원하자, 국가 차원에서 중약재 및 관련 전통의약지식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익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중국 정부 관료와 학계의 주장은 21세기 들어 중국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은 생물다양성 대국으로 생물유전자원 또한 매우

풍부하다. 최근 중국 유전자원 보호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유전자원 유실 혹은 상실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몇몇 외국 기관은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획득한 후 연구 개발을 통해 고액의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외국기관이 유전자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특허권을 획득함으로써 중국의 관련 특허권 신청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⁵⁾.”

2) “일본의 漢方醫學, 한국의 韓醫 등은 모두 중국전통의학의 이론 체계를 기본구조로 삼고 있지만 점차 (중국을) 추월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의학은 ‘中國原産, 韓國開花, 日本結果, 歐美收獲(중국이 원산지이나 한국에서 개화하고, 일본이 결실을 맺으며, 구미가 수확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여 외국에 탈취당한 중약 관련 특허가 1,000여 건에 달한다⁶⁾.”

3) “일본은 육신환에 기초한 구심환을 개발하여 연간 수억 달러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의 우황청심환은 원래 중국의 우황청심액에 기원한다. 일본의 모 기업은 미국에 궤양성 결장염의 치료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작약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가미소요산, 당귀작약탕, 작약감초탕, 계지복령환의 4개 복방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처럼 중약지식재산권이 대량 유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⁷⁾.”

중의약계는 중국의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중약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희박하고, 둘째, 중약 지식재산권 보호 법규가 완비되지 못하였으며, 셋째, 현행의 특허제도로는 온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⁸⁾.

이에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연구 과제로 “中醫藥傳統知識保護研究”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14개 대책을 제시하였다⁹⁾.

- ① 중의약 전통지식 전문 보호법의 제정
- ②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명단 및 지표 목록 수립
- ③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데이터베이스
- ④ 상응하는 권리 보호제도의 수립
- ⑤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정
- ⑥ 중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의 강화
- ⑦ 중의약 전통지식 긴급 구조 프로젝트 수립
- ⑧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의 신청 및 등록
- ⑨ 중의약 전통지식의 획득과 이용에 있어 사전통보동의 원칙의 관철
- ⑩ 민간의료/단·협방 등기 관리제도의 규범화
- ⑪ 중의약 전통지식 관리위원회 성립
- ⑫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발전 기금 건립
- ⑬ 인재 배양 조치의 창신 및 고려
- ⑭ 전통지식 보호의 국제적 입장과 원칙 확립

2. 제도측면에서 중국의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분석

1) 중국의 특허법과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知識產權’이라 하며 특허의 개념에는 發明(특허), 實用新型(실용신안), 外觀設計(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최근 중국은 특허 및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요청도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를 정비해가고 있다¹⁰⁾.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령 가운데 전통의약 분야와 관련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특허법이다. 1985년 제정한 이래 중국의 특허법(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은 이후 1992년과 2000년, 그리고 2008년 등 3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제2차 개정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TRIPS 수준에 맞는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특허법을 갖게 되었다.

2008년 개정된 특허법은 총 8장, 7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의약과 관련하여 중국의 특허법은 전통의약에 근거한 조성물, 생약추출물, 그리고 이들을 만들거나 추출하는 방법 등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중국 특허법 제 25조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① 과학발견
- ② 智力활동의 규칙과 방법
- ③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 ④ 동물 및 식물 품종
- ⑤ 원자핵의 변환으로 획득한 물질
- ⑥ 평면 인쇄품의 도안, 색채 혹은 양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주요한 표지에 대한 디자인

이처럼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문헌화 정도가 매우 높지만 특허법이 요구하는 신규성, 실용성, 창조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허법에 대해 중의약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본 법에서 말하는 발명·창조는 發明, 實用新型(실용신안)과 外觀設計(디자인)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들 3가지 요소가 특허의 대상인 것이다.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전통의약 분야에 적용하면 신규성은 특허출원 전에 어떤 동일한 발명이나 중국 혹은 해외에서 공개되지 않았거나 중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어떠한 수단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보성은 의약품에서의 진보성, 제약방법에서의 진보성, 새로운 효능으로서의 진보성이 있을 수 있다¹¹⁾.

다른 한편 중국은 약품이나 의약품도를 특허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의약 분야의 특허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실제 이 분야의 특허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중국의 특허법은 자국의 전통의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 27일 개정된 특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취득 이용하고 이 유전자원을 의지해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동 제26조 제5항에는 “유전자원을 의지해 완성한 발명창조

의 경우 출원인은 특허신청문건에 이 유전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한다. 출원인이 원시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국이 특허법에서 약재를 포함한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¹²⁾.

첫째, 유전자원 분야의 발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생물다양성 보호에 이점이 있다.

둘째, 특허신청문건 또는 관련 문건에서 유전자원의 출처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타국의 해적행위를 방지하고, 후속 이익 공유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는 유전자원 관련 생물기술의 실시와 상업화를 촉진시키며, 이는 물질방면의 이익 공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전리법(특허법)』을 비롯한 중국의 현행 법규는 어느 특정 방면에 대한 규정으로 전체적으로 중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에 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또한 중약복방, 중의고적상의 지식 및 중의약전통지식의 부당 점유문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법률이 있지만 유효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2) 정강정책을 통한 보호

중국은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는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에서 만든 행정법규, 그리고 각 부처에서 마련한 부문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 법률로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책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담은 ‘지도성 정책문건’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규정하기도 한다. 21세기 들어 중국이 발표한 주요한 정책 문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关于加强生物物种资源保护和管理的通知」(2004)

중국 国务院办公厅은 2004년 3월 31일 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 통지에는 ABS와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생물자원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 ②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전개
- ③ 생물자원 항목별 분류 작업 진행
- ④ 생물자원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 ⑤ 생물자원 보호 기초 능력 배양
- ⑥ 생물자원 대외수출 심사 비준 제도의 정비
- ⑦ 생물자원의 출입국 조사 제도의 수립
- ⑧ 생물자원의 대외 협력 관리의 강화
- ⑨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강화
- ⑩ 인재 배양의 강화
- ⑪ 자금 투입의 확대
- ⑫ 預警 감독의 강화
- ⑬ 입법 작업의 완성
- ⑭ 법 집행 역량의 강화
- ⑮ 영도 및 협조 강화

이상 15개 정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기초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자원의 수출 허가에 관한 체제 및 규칙의 개선

생물자원 수출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중앙정부 각 부문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련 된 정보를 공유하는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설치한다. 중국 국내에서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의 생물자원예의 접근은 중앙정부의 관계 부서의 허가를 얻어야만 하고, 관련 정보 데이터를 기술하여 제출해야 한다.(6항)

둘째, 수출입 생물자원에 관한 조사 및 검사제도의 확립

생물자원의 국외 반출의 경우에는 국가의 관계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보호종 또는 멸종 위기종의 수출은 멸종 위기종의 국제 취급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7항)

셋째, 생물자원을 이용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관리 강화

생물자원 이용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거나 생물자원을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쌍방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명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연구기관 및 연구원의 연구협력과 참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 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국 국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8항)

넷째, 관계 법령의 정비

생물자원의 채취, 취급과 교환 및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 개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확충하고, 후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법령을 정비하는 틀을 만든다. 야생의 생물자원을 직접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재배 또는 사육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13항)

(2) 「国务院关于落实科学发展观加强环境保护的决定」(2005, 39호)

2005년 중국 국무원은 환경보호 강화 및 과학발전 비전 실시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와 생태학적 보상 체제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부문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 임업, 과학기술, 발전개혁, 재정, 상무(국제무역) 등의 관계 부문이 참가하여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책과 실시를 조정하고 있다.

(3) 「全国生物物种资源保护与利用规划纲要」(2007)

중국 환경보호부는 생물자원에 관한 2년간의 전국 조사를 기초로 생물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국가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중점 활동 6은 ABS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와 프로젝트를 금후 10년 동안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첫째,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스템을 세운다.

둘째, 특허 신청자에 대해 유전자원의 출처를 명시하고, 원산지 증명 또는 출처의 합법성의 증명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셋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보존하는 기관과 Clearing House 매커니즘을 확립한다.

넷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보호를 지원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확립한다.

(4) 「國家知識產權(財產權)戰略綱要」(2008)의 제정과 지적권 강화조치

2008년 제정 공포된 「國家知識產權(財產權)戰略綱要」는 중국의 전통지식 보호제도를 보완구축하고, 전통지식을 정리 계승하며 발전을 촉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통의약지식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의 관리, 보호와 이용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개발과 이용에 힘쓴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강요」에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의 사전통보동의권(知情同意權)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전자원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통보 및 동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동의를 받는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지역공동체인지, 개인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5) 「国务院关于扶持和促进中醫药事业发展的若干意见」(2009)

중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의 강화, 중의약 특허심사 표준과 중약 품종보호제도의 정비,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명단의 연구 및 제정, 중의약 전통지식 전문 보호제도의 점진적인 건립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6) 「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與行动计划」(2011-2030년)

2010년은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던 한 해로 평가한다. 당시 중국 국무원 부총리李克強을 주석으로 하는 '2010국제생물다양성의 해 중국국가위원회'에서는 「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與行动计划(2011-2030년)」(이하 「전략 및 행동계획」으로 약칭)을 반포하여 향후 20년 동안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유전자원 및 상관 전통지식의 획득, 이용 및 이익 공유를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가운데 해결해야 할 중점 사항으로 선정하였다.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새로운 환경 조건아래에서 중국의 유전자원 및 상관 전통지식의 보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중국의 관련 법률체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 및 행동계획」을 통해 중국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한다. 셋째, 생물다양성조약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형문화유산과 중의약 보호 등 다른 사업 영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략 및 행동계획」에서는 우선행동 및 우선항목을 제시하고,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정책과 제도제정을 위한 연구를 촉진키로 하였다. 특허출원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개선,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을 위한 상호합의된 계약조건, 사전통보승인절차의 확립을 제시했다. 또 이 행동과 항목을 실시할 때 환경보호, 농업, 임업, 중의약, 지식재산권 등의 관련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3) 非物質文化遺產(무형문화유산) 지정을 통한 보호

최근 중국의 전통의약 관련 정부와 학계에서는 중국의 전

통의약을 진귀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면서 당연히 보호, 전승함과 동시에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한다. 특히 한국이 2009년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데 자극받아 2010년에는 중의침구를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켰고, 2011년에는 『황제내경』과 『본초강목』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다.

중국이 자국의 전통의학 지식문화를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협정'이 체결된 이후 구체화되었다. 이후 2005년 전통의학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전통의학 분야의 국가급 무형유산목록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점은 당시 중국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논문에서 “중의학은 수 천 년의 발전 과정 중에 이미 독특한 이론체계를 형성하였고, 우리에게 中醫藥經典理論, 中藥炮炙工藝, 中醫方劑配伍, 鍼灸經典理論과 手法技藝, 骨傷推拿按摩技藝, 中醫傳統保健理論과 方法, 구전되어 온 民族民間醫藥習俗 등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남겨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할 중요한 내용들이다. 中醫藥古籍, 醫藥文化遺址, 中醫藥文物, 中醫藥圖譜 등도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다.”¹³⁾고 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2006년과 2008년, 그리고 2011년 3회에 걸쳐 전통의학 분야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발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 등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중국 전통의학 목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CM¹⁴⁾

登載時期	分類番號	文化遺產名稱	申請地域·機關
2006	IX-1	中醫生命與疾病認知方法	中國中醫科學院
	IX-2	中醫診法	中國中醫科學院
	IX-3	中藥炮制技術	中國中醫科學院 中國中藥協會
	IX-4	中醫傳統製劑方法	中國中醫科學院 中國中藥協會
	IX-5	鍼灸	中國中醫科學院 中國鍼灸學會
	IX-6	中醫正骨療法	中國中醫科學院
	IX-7	同仁堂中醫藥文化	中國北京同仁堂(集團)有限責任公司
	IX-8	胡慶餘堂中藥文化	浙江省 杭州市
	IX-9	藏醫藥(拉薩北派藏醫水銀洗煉法和藏藥仁青常覺配伍技術, 甘孜州南派藏醫藥)	西藏自治區 四川省甘孜藏族自治州
2008	VIII-89	涼茶	廣東省文化廳
	IX-10	中醫養生(藥膳八珍湯, 靈源萬應茶, 永定萬應茶)	山西省太原市 福建省晉江市, 永定縣
2008	IX-11	傳統中醫藥文化(鶴年堂中醫藥養生文化, 九芝堂傳統中藥文化, 潘高壽傳統中藥文化, 陳李濟傳統中藥文化, 同濟堂傳統中藥文化)	北京鶴年堂醫藥有限責任公司 湖南省九芝堂股份有限公司 廣東省廣州潘高壽藥業股份有限公司·廣州陳李濟製藥廠

		貴州省同濟堂製藥有限公司	
IX-12	蒙醫藥(贊巴拉道爾吉溫鍼, 火鍼療法)	內蒙古自治區	
IX-13	畚族醫藥(痧症療法, 六神經絡骨通藥制作工藝)	浙江省麗水市 福建省羅源縣	
IX-14	瑤族醫藥(藥浴療法)	貴州省從江縣	
IX-15	苗醫藥(骨傷蛇傷療法, 九節茶藥制作工藝)	貴州省雷山縣, 黔东南苗族侗族自治州	
IX-16	侗醫藥(過路黃藥制作工藝)	貴州省黔东南苗族侗族自治州	
IX-17	回族醫藥(張氏回醫正骨療法, 回族湯瓶八診療法)	寧夏回族自治區吳忠市, 銀川市	
X-84	廟會(藥王山廟會)	陝西省 銅川市	
IX-3	中藥炮制技術(四大懷藥種植與炮制, 中藥炮制技藝)	河南省焦作市 四川省成都市	
IX-4	中醫傳統製劑方法(龜齡集傳統制作技藝, 雷允上六神丸制作技藝, 東阿阿膠制作技藝, 廖氏化風丹制作技藝)	山西省太谷縣 江蘇省蘇州市 山東省東阿縣, 平陰縣 貴州省遵義市紅花崗區, 涇川區	
IX-5	鍼灸(劉氏刺灸療法)	重慶市渝中区	
IX-6	中醫正骨療法(宮廷正骨, 羅氏正骨法, 石氏傷科療法, 平樂郭氏正骨法)	北京市護國寺中醫醫院 北京市朝陽區 上海市黃浦區 河南省洛陽市 廣東省深圳市	
IX-9	藏醫藥(藏醫外治法, 藏醫尿診法, 藏醫藥浴療法, 甘南藏醫藥, 藏藥炮制技藝, 藏藥七十味珍珠丸配伍技藝, 藏藥珊瑚七十味丸配伍技藝, 藏藥阿如拉炮制技藝, 七十味珍珠丸賽太炮制技藝)	西藏自治區藏醫學院· 西藏自治區山南地區藏醫院· 青海省藏醫院· 甘肅省碌曲縣· 西藏自治區藏醫院· 西藏自治區藏藥廠· 西藏自治區雄巴拉曲神水藏藥廠· 青海省金柯藏藥藥業股份有限公司	
X-60	藥市習俗(樟樹藥俗, 百泉藥會, 禹州藥會)	江西省 樟樹市 河南省 輝縣市, 禹州市	
IX-18	壯醫藥(壯醫藥線點灸療法)	廣西中醫學院	
IX-19	彝醫藥(彝醫水膏藥療法)	雲南省楚雄彝族自治州	
IX-20	傣醫藥(睡藥療法)	雲南省西雙版納傣族自治州 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	
IX-21	維吾爾醫藥(維藥傳統炮制技藝, 木尼孜其·木斯力湯藥制作技藝, 食物療法, 庫西台療法)	新疆維吾爾自治區新疆維吾爾醫學高等專科學校, 和田地區 莎車縣 新疆維吾爾自治區維吾爾醫藥研究所	
I-101	李時珍傳說	湖北省蕪春縣	
2011	IX-2	中醫診法(葛氏捏筋拍打療法, 王氏脊椎療法, 道虎壁王氏中醫婦科, 朱氏推拿療法, 張一貼內科療法)	北京市海澱區 宣武區, 山西省平遙縣, 上海市, 安徽省黃山市
	IX-4	中醫傳統製劑方法(達仁堂清宮壽桃丸傳統制作技藝, 定坤丹制作技藝, 六神丸制作技藝, 致和堂膏滋藥制作技藝, 季德勝蛇藥制作技藝, 朱養心傳統夏氏丹藥制作技藝, 漳州片仔廣制作技藝, 夏氏丹藥制作技藝)	天津中新藥業集團股份有限公司達仁堂製藥廠, 山西省太谷縣, 上海市黃浦區, 江蘇省江陰市 南通市, 浙江省杭州市, 福建省漳州市, 湖北省京山縣 武漢市武昌區, 廣東省博羅縣 廣東省醫

	馬應龍眼藥制作技藝, 羅浮山百草油制作技藝, 保滋堂保嬰丹制作技藝, 桐君閣傳統丸劑膏藥制作技藝)	藥行業協會, 重慶市南岸區
IX-5	鍼灸(陸氏鍼灸療法)	上海市
IX-6	正骨療法(武氏正骨療法, 蒙醫正骨療法, 張氏骨傷療法, 章氏骨傷療法, 林氏骨傷療法)	山西省高平市, 內蒙古自治區科爾沁左翼 後旗, 浙江省富陽市 台州市, 福建省福州市倉山區
IX-9	藏醫藥(藏醫骨傷療法)	雲南省迪慶藏族自治州
IX-12	蒙醫藥(蒙醫傳統正骨術, 血衰症療法)	內蒙古自治區中蒙醫醫院, 遼寧省阜新市
IX-15	苗醫藥(癩痢症療法 鈎節風療法)	湖南省鳳凰縣, 花垣縣

이어서 2011년에는 전통의학 분야가 포함된 「非物質文化遺產保護法」이 2월 25일 第11屆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총 6장 45조로 구성된 이 법의 제1조에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고 하여 법 제정 의의 및 목적을 설명하고 제2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전통구전문학, 전통미술, 서법, 음악, 무용, 희극, 곡예와 잡극, 전통기에 등과 더불어 의학이 포함되어 있다.

중의과학원 의사문헌연구소장 겸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 위원회 위원인 劉長華는 “수 천년 동안 중국인들이 사용해 온 중약은 특정 기업 혹은 개인이 개발하여 특허를 신청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이 그 이익을 소유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특허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통지식이 현재의 과학기술과 조우할 때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중의약은 실질적으로 전통지식으로 국제적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2008년 국무원에서 동아시아교제작기예를 국가급 非物質文化遺產(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였는데, 이는 국제법에 의거 동아시아교를 전통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상표의 지명도를 높이고 국내 및 국제 시장 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현실적, 잠재적으로 사회 및 경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했다¹⁵⁾.

3. 중약 관련 학계의 연구 동향 분석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에서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토착민사회(ILC)’가 소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관련 학계에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약재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발굴 및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1) 地方本草에 대한 연구

지방본초는 일정 역사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사용한 약물의 본초서적이다. 지방본초에 기재된 약물은 소수의 ‘一地所產, 供銷全國’ (특정지역에서 생산하여 전국에 판매하는) 특성을 지닌 지역 특산 약재 외에 대다수는 지방성 초약이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인 주요한 지방본초

서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⁶⁾.

(1) 晋, 稽含, 『南方草木狀』: 兩廣, 雲南 및 베트남 북부에서 생산되는 약용식물을 포함한 자원 식물 80종이 기재되어 있다. 李惠林, 楊竟生 등의 연구로 품종에 대한 고증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나,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이 책의 진위 여부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宋, 王介, 『履巉岩本草』: 南宋時期 浙江 杭州 지역의 지방성 본초서이다. 王介는 화가이다. 이 책에는 매우 많은 초약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약재에 대한 채색 그림이 그려져 있다. 남송 시기 항주 일대의 민간에서 사용했던 약의 현황과 본초 고증 등 방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수록된 약재는 206종이다.

(3) 明, 蘭茂, 『滇南本草』: 중국에 현존하는 고대 지방성 본초 서적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작품으로 이시진의 『本草綱目』보다 140년 앞선다. 이 책은 민족약물을 포함한 서남 고원지구의 약물을 기술한 진귀한 저작으로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8종을 수록하고 있다. 『滇南本草』에는 운남의 초목과 채소 중에서 약으로 쓸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수많은 소수민족 의약과 한족의약이 상호 결합한 예증뿐만 아니라 약재 효과에 대한 경험과 민간의 비방도 일부 기술되어 있다. 기재된 약물의 대다수는 『本草綱目』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중국 중의약학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고, 더욱이 운남 지역 의약 연구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운남식물연구소의 저명한 식물학자 吳徵鎰은 이 책에 기재된 식물에 대한 상세한 분류와 심사를 진행했다. 民國34年 經利彬, 吳徵鎰 등은 『滇南本草圖譜』를 출판했다. 이후 운남성 藥物研究所 및 雲南藥品檢驗所의 楊竟生, 曾育麟, 朱兆雲, 王京昆, 魏鶴賢 등은 『滇南本草』의 약물 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4) 明, 佚名氏, 『草藥便覽』: 흔히 얇은 지방 초약서로 원래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鄭金生 등이 『醫方捷徑』에 포함되어 있지만 고증을 통해 중국의 남방, 아마 광둥 복건 일대의 독립된 지방 본초서임을 밝혔다. 이 책에는 248종의 약재가 기재되어 있다. 각 약의 내용은 비록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많은 약물이 동 시대의 이시진 『本草綱目』에 보이지 않는 약재를 싣고 있다. 특히 초약의 명칭, 배열방법, 효과 및 병명 등은 모두 뚜렷한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각 약재의 명칭 아래에 간단하게 약의 효과를 적고, 별칭을 소개하고 있다. 각 약에 대한 내용은 한 줄 정도로 짧은데 약의 성질과 효과 및 주치를 서술하고 있다. 약재의 모양에 대한 묘사나 도형은 없다. 鄭金生이 교점한 『草藥便覽』은 『海外回歸善本古籍叢書』(제10책, 인민위생출판사, 2003)에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 기재된 약물에 대한 고증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여지가 남아 있다.

(5) 清, 『天寶本草』: 四川省 草藥 189종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크게 藥性賦와 藥性歌로 구분되어 있다. 藥性賦에는 寒·熱·溫·平 4性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藥性歌는 歌訣 형식으로 초약의 약성, 효능, 주치를 기술하고 있다. 鄔家

린이 은사 謝宗萬 교수의 지원 아래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판본 고찰 및 교점, 품종에 대한 고증을 통해 『天寶本草新編』(중의고적출판사, 2001)을 출판하였다.

(6) 清, 『分類草藥性』: 청대 사천 지방본초로 아마 다수의 민간인의 경험을 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특정한 1인의 저작물은 아니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물 400여종이 수록되어 있다. 소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약명의 머리 혹은 꼬리 글자에 따라 草, 藤, 風, 根, 頭, 皮, 葉, 花, 子, 香, 蓮, 椒, 麻, 龍, 箭, 石, 菜, 蒿, 角, 衣 등으로 나눈 것으로 만약 약명의 머리 혹은 꼬리 부분이 이들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잡류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明, 『草藥便覽』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이 책에 수록된 433종의 초약은 사천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초약으로 약명, 병명, 치료경험 등은 모두 사천의 지방 습속을 반영한다. 鄒家林이 은사 謝宗萬 교수의 지원 아래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판본 고찰 및 교점, 품종에 대한 고증을 통해 『分類草藥性新編』(중의고적출판사, 2007)을 출판하였다.

(7) 清, 劉善述, 『草木便方』: 사천 동부 민간에서 사용하는 약에 관한 지방본초이다. 이 책은 4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2집은 초약성에 관한 것으로 508종의 약물을 수록하고 있으며, 뒤의 2집은 草藥方으로 8部, 125門, 方劑 약 70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약물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방제가 간단하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백여 년 동안 민간 초의들이 활용하였으며,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았다. 사천중약연구소 趙素云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약물의 性味, 效能, 圖文에 대한 고증을 진행했다. 아울러 508종 약물의 생존 분포, 용량법, 새로운 치료효과, 새로운 약용부위, 금기, 독성 등을 보충하여 책에 있는 同物異名, 同名異物에 대한 혼란 현상을 극복하고 『草木便方』의 교점 및 신편본(증경출판사)을 출판하였다. 귀주성중의연구소 楊濟中 등도 『草木便方今釋』(귀주인민출판사, 1986)을 편찬하였다.

(8) 清, 何克諫, 『生草藥性備要』: 이 책은 『本草綱目』에 수록되지 않은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물 315종을 수록하고 있는데 약재의 약명, 별명, 산지, 성미, 주치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초약의 형태로부터 약성을 판단하는 특색이 있다. 책의 끝 부분에는 雜症驗方 8수가 부가되어 있다. 중국 동남지방 초약을 기술한 중요한 저작이다.

(9) 清, 趙其光, 『本草求原』: 영남 지방의 중요한 지방본초로 中藥, 食藥, 草藥 3부분을 포함한 중초약 900여 종이 기재되어 있다. 후에 奇病症治를 부가하였고, 각종 奇難雜症을 기재하였다.

(10) 民國, 蕭步丹, 『嶺南采藥錄』: 영남 지구의 약물 576종을 수록하고 있다. 侯召寬, 徐祥浩 등의 이들 본초에 대한 비교적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庄兆祥은 다년간 영남지구에서 실물을 관찰하고 획득한 자료에 주석을 달고 친히 식물약의 그림을 그려 부가하였다.

그밖에 근대에 출판된 廣西 지역의 『陸川本草』, 福建 지역의 『閩東本草』와 『泉州本草』, 湖北 지역의 『中國武當山本草藥志』 등도 모두 지방본초에 속한다. 최근 廣州中醫藥大學 梅全喜 등이 영남 본초의적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정리·출판한 『廣東地產藥材研究』(廣東科技出版社, 2011) 역시 영남 지방 본초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玉龍本草』, 『晶珠本草』, 『月王藥診』, 『四部醫典』, 『甘露八部』, 『藥性廣論』, 『藍琉璃』, 『無垢水晶鬘之本草圖解』, 『彝藥本草』 등 민족지방본초는 언어, 용약이론, 습관이 비교적 특수하여 민족약물학의 범주에 속한다.

2) 中國民族植物學會의 학회 활동

역사적으로 민족식물학이라는 용어는 1896년 미국 식물학자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민족식물학 조사는 북아메리카 선주민의 유익한 식물에 관한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식민지시대 서양 제국에 의해 산업을 위한 식물 자원의 개발 및 현대 플랜테이션 농업에 있어서 유전자원 탐색으로 발전해왔다.

중국에서 민족식물학의 발전은 문화대혁명 이후 서양의학을 대신하여 중국의학에 역점을 두면서 중국 국내의 제민족이 스스로의 전통의학, 전승의학에 기반하여 사용한 약물로서의 민족약물을 연구·조사하면서 발전해왔다. 학문분야로서의 민족식물학은 1980년대 중국과학원에 관련기관(1987년 곤명식물연구소 설립)이 창설된 이래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93년의 생물다양성조약(CBD)의 발효를 전후해서 식물유전자원과 그 이용에 관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이 논의되었고, 중국의학과 민족약물 분야가 중국정부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중국 민족식물학은 基礎的·記述的인 것에서 양적 연구, 응용분야까지 확대되었고, 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생물다양성의 보전, 문화적 다양성의 보전까지 미치고 있다.

중국의 민족식물학회는 2002년 절강성 항주에서 제1회 “중국 민족식물학 학술 및 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2년 마다 학술대회를 진행해왔다. 2010년에는 북경에서 ‘민족식물학의 발전과 전통지식 보호’라는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 겸 제4회 아시아 태평양 민족식물학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당시 학술대회에서는 “TK의 문제는 CBD 관련회의와 TRIPS, WIPO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CBD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TK의 이익공유를 위한 국제적 제도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다가올 2010년 10월 18일-29일까지 나고야에서 개최될 COP10에서의 ABS문제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으로써 CBD/COP10과의 관련을 명확하게 했다¹⁷⁾.

또 “민족식물학 연구를 높여 TK의 적용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TK의 보전과 계승과 마찬가지로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서술함으로써 중국 국내의 민족 전통의약에 있어서 약용식물의 이용에 관한 지식은 중국의 TK로서 이익공유의 대상이 된다고 제창하고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 소수민족 전통의약에 대한 배려를 표시하

면서 중국 민족의 단결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전통 중국 의료·의약에 있어서 약용식물의 이용에 관한 지식(처방)을 중국의 TK로서 그 대가를 주로 한국, 일본에 대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약용식물을 포함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상품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며, 기술 강국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유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자원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의학 분야는 한약재를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중일 간 전통지식 관련 소유권 경쟁 시 로열티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의약산업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내 한의사의 처방 및 한약조제, 한약제제 등 천연물 이용의약품 제조 등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농후하다. 최근 중국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제적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약 관련 특허를 외국에 탈취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중국의 약용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체계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전리법」(특허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전통의약지식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셋째, 각종 연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보호방안을 공유하고, 세계 각 지역에 진출하고 필요한 경우 양자간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중의약의 세계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의약제도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유용한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향후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익 공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가도 외국의 유전자원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원산지국의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았는지, 상호 합의된 조건(MAT)을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생물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 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중의약 비법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한의약 기술이 중국을 모태로 발달한 것이 많지만 전략적으로 지역토착민사회(ILC)가 보유한 전통지식에 한정해 이익 공유의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전통지식을 근거로 이익 공유를 요구할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한약 관련 전통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문헌 창의적 해석을 통한 미래지식보급 구축(과제번호: K12110)’의 지원

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Yu Dong-hwan, Cultural strategy of critical succession theory, Compiled by Korean Association for Studies of Philosophical Thought, Groping modern China-cultural tradition, modernization and cultural fever, Seoul : Dongnyeok, 1992 : 228.
2. Zhāng Dài Nián, Jiāng Guǎng Huī, Treasure of Chinese culture, Chinese medicine, Compiled by Korea philosophical thoughts research society, Groping modern China-cultural tradition, modernization and cultural fever, Seoul : Dongnyeok, 1992 : 222.
3. Publisher of collection of intangible national cultural assets, collection of intangible national cultural assets, Beijing : Beijing Industrial University Press, 2006 : 331.
4. Lǚ Kǎi, Wáng Xián,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Legal system and economy, 2011 ; 264 : 42.
5. Zhuāng Guó Tàì(Chief of Bureau of Natural Ecology Protection at China D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terpretation <2011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fo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ournal, 2011.
6. Zhèng Róng, Zhuāng Qián Zhú, Examination of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Chinese medicine in the world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oughts on Chinese medicinal cultural assets, Beijing : Chinese Medicinal Literature Publishing, 2005 : 222.
7. Qí Fāng, Tián Yǎ Tíng, How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hinese medicine Guangming Daily, 2009.
8. Lǚ Kǎi, Wáng Xián,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Legal system and economy, 2011 ; 264 : 42.
9. Qí Fāng, Tián Yǎ Tíng, How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hinese medicine Guangming Daily, 2009.
10.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A guidebook for oversea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China), 2005 : 4.
11. Natural Products Research Institut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SNU, Research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knowledge on traditional medicine and th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Intellectual

- Property Office, 2002 : 80.
12. Yu Ye-ri, A Study on China'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legislation, Collection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2011 ; 56(3) : 219.
 13. Zhèng Róng, Zhuāng Qián Zhú, Examination of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Chinese medicine in the world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oughts on Chinese medicinal cultural assets. Beijing : Chinese Medicinal Literature Publishing, 2005 : 223.
 14. Lee MH. A study on the cultural herita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aejeon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1 : 16-22.
 15. Qí Fāng, Tián Yǎ Tíng. How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hinese medicine Guangming Daily, July 10, 2009.
 16. Wū Jiā Lín, Zhào Zhōng Zhèn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School of Chinese Medicine). Consideration on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usage of the local herbs and medicines. Collection of papers of the 16th academic forum on the medicines and herbs)(separate printing). 2011
 17. Japanese Bio-industry Association (JBA). The project to facilit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based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Heisei 22 Report, 2011 : 42-5.